

◎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-104호

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

2021년 12월 07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핀테크, I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상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하여 향후 본인확인 기관 신규지정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사기준 현행화, 평가방식 개선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정 심사환경을 마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매년 3월 31일 심사일정 전반(서류접수, 심사기간 등)을 공고하여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미리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심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3조)
- 나.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심사항목은 삭제하고, 최신 기술 및 보안 이슈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재구성(안 제6조 및 별표 2)
- 다. 심사항목별 점수제를 도입하여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하고,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 평가 항목에 대해 '적합'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(안 제9조)
- 라.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10조)
- 마. 법에 명시된 본인확인기관의 업무를 고시에서 구체화(안 제12조의2)
- 바. 사업환경의 변화, 기술발전 등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추가 또는 변경 등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절차 마련(안 13조의2)

3. 의견제출

- 우 편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(중앙동)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
- 팩 스 / 전자우편(E-mail) : 02-2110-1521,1523 / kky222@korea.kr
- 기한 :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
 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.반대 여부와 그 사유)
 -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
4. 기타 문의사항

-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(☎ 02-2110-1521)